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건물 -

고유번호 1343-2004-008591



[건물]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700

【 표 제 부 】 (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04년8월17일	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700	경량철골구조(조립식) 판넬지붕 단층 주택 61.75㎡	
2		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700 [도로명주소]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로 35-7	경량철골구조(조립식) 판넬지붕 단층 주택 61.75㎡	도로명주소 2012년8월1일 등기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	소유권보존	2004년8월17일 제34866호		소유자 한익수 290802-*****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700
2	소유권이전	2020년10월7일 제46448호	2020년3월1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	소유자 박금순 361121-*****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로 35-7
2-1	2번소유권경정	2023년12월20일 제52847호	2022년2월22일 사해행위취소	공유자 지분 15분의 13 박금순 361121-*****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로 35-7 지분 15분의 2 한상복 540616-*****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로 35-7 대위자 서울보증보험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(연지동) 대위원인 2022년 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가단19936

[건물]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700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	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정본
3	소유권일부(11분의2)가처분	2021년11월10일 제56905호	2021년11월10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가처분결정(2021카단10964)	피보전권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110111-0099774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(연지동) (강북신용지원단) 금지사항 매매, 증여, 전세권, 저당권,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
4	2번한상복지분강제 경매개시결정	2024년5월9일 제19916호	2024년5월9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(2024타경34687)	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110111-0099774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(연지동) (강북신용지우연단)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기록사항 없음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열람일시 : 2025년09월30일 19시56분38초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343-2004-008591

[건물]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700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박금순 (공유자)	361121-*****	15분의 13	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로 35-7	2, 2-1
한상복 (공유자)	540616-*****	15분의 2	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로 35-7	2, 2-1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3	가처분	2021년11월10일 제56905호	피보전권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	박금순 등
4	강제경매개시결정	2024년5월9일 제19916호	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	한상복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- 기록사항 없음

[참 고 사 항]

-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